

국 민 평 생 직 업 능 력 개 발 법
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

2023. 11.

고 용 노 동 부
(직업능력정책과)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자격·교육·훈련·경력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정보를 개인별로 저축·통합 관리하여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가 2023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됨. 직업교육을 받는 고등학생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전문 교과 이수를 통해 해당 직업군에서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하고 있으므로 이를 직무능력으로 인정하고 습득한 직무능력정보를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여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 개편(안 별표 3 개정)

고등학생이 직업교육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 중 교육이수정보에 고등학교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 이수정보를 추가함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교육이수정보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국가직무능력
표준 기반 교과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282